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2 발의연월일: 2024. 7. 24.

발 의 자:이만희・박정하・강선영

구자근 • 이달희 • 서천호

권성동 • 박충권 • 김종양

서범수·조은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의 부과는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긴급임시조치의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피해자 의 주거시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 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가 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행개선에 필요한 상담 등이 필요함에 도, 이는 법원에서 판사의 결정으로만 할 수 있고, 통상 수개월이 지나 이행되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움.

이에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고(안 제63조 및 제66조), 경찰 수사단계부터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상담 위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 또는 가해자에 관한 재신고와 재범률을 낮추고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제8조제1항).

법률 제 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임시조치"로 한다. 제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제66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 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 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생략)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아

개 정

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임시조치-----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 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 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 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 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③ • ④ (생 략)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 제66조(과태료)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 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 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 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 정폭력행위자
- ③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